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213호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조용훈 의원 등 6명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13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15.

대표발의자: 조용훈

공동발의자: 김남충, 서승필,
김종욱, 홍태의,
허명숙

1. 제안이유

논산시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나. 보험목적물(안 제4조)
- 다. 지원대상(안 제5조)
- 라. 보험료 지원(안 제6조)
- 마. 지원한도(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풍수해보험법」 제7조
- 나. 조례안예고: 2023. 11. 15. ~ 11. 19.(5일간)

□ 제정조례안

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조용훈 의원 등 6명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22. 1. 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4. > [전문개정 2008. 3. 28.]